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308회 제2차 정례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서



2024. 11.

권속자 의원

제안 설명서

제안자: 권숙자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제정 조례안은, 관내 가로수의 바람직한 생육환경 조성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의 원활한 보행과 통행을 위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먼저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 안 제5조는 가로수 조성·관리에 대한 협의 사항을,
- 안 제6부터 안 제7조까지는 가로수 조성·관리의 승인과 점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 안 제8조는 주민참여 사항을 명시하고,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 포함하여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사항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와 안 제11조는 원인자부담금과 가로수 관리 대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2024년 11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제정조례안은 대구 지역 내 가장 많은 가로수를 조성하고 있는 달서구의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위한 것으로,
-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권속자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00924110
----------	----------

발의연월일: 2024. 11. 6.

발 의 자: 권속자 김장관 강한곤
임미연 도하석 이영빈
김기열 고명욱

1. 제안이유

- 관내 가로수의 바람직한 생육환경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로의 원활한 보행과 통행을 위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가로수 조성·관리 협의 사항(안 제5조)
- 다. 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및 점검 사항(안 제6조 및 제7조)
- 라.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사항(안 제8조)
- 마. 가로수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안 제9조)
- 바. 가로수의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사. 가로수 관리대장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3. 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 나. 비용추계서: 비대상

대구광역시달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가로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 및 도시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2.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 정류장·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가로수에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가로수 조성·관리 협의 등)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담당 행정기관 또는 사업 시행부서는 계획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신설, 변경, 폐지 등과 관련한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
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를 새로 포장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및 통신·전기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4. 축제, 행사 등을 위해 가로수에 일시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5.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등 가로수 관리사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

② 제1항의 사항을 협의할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가로수 조성 계획 및 식재공간 반영 여부
2.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
3. 그 밖에 관계 법령, 조례, 가로수의 조성·관리계획에 따른 사항 등

제6조(가로수 조성·관리 승인) ①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차 및 승인기간 등은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점검 등) ① 구청장은 노선별·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로수 점검 시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병해충의 감염 여부, 고사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정기점검은 연1회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④ 점검결과는 가로수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등) ① 구청장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1. 물주기

2. 병해충 발생 신고

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구청장에게 신고

5. 비상재해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

②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

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

3. 가로수 보호틀 또는 가로수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

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

제9조(가로수 관리 사업 등) 구청장은 가로수 유지·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의 수형을 전정하거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1. 가로수 관리·보호를 위한 지원사업
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구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쳐 가로수와 그 관리시설물을 옮겨심기·이설 또는 제거 할 경우에는 원인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단,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로수의 가지치기와 이식은 구청장이 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원인자에게 작업을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가로수와 가로수 시설물이 사고 또는 위해로 인하여 인위적인 피해를 입었을 경우 훼손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직접 복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⑤ 구청장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부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제11조(가로수 관리대장) 구청장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가로수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전산화된 관리대장을 만들어 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제10조 관련)

피 해 발 생 의 경 우	<p>1. 벌목, 수간(樹幹)절단 등으로 조경적인 가치가 없는 경우 ⇒ 원상복구를 위한 도급공사비</p> <p>2. 과도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수목비의 20% + 실작업비 ※ 과도한 가지훼손 : 수관(樹冠)의 1/3이상 훼손</p> <p>3. 경미한 가지훼손 및 보호시설을 요하는 피해의 경우 ⇒ 실작업비</p>
피 해 이 의 원 인 발 생 의 경 우	<p>1. 옮겨심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가로수 등을 옮겨심기하는 경우 : 구청장의 승인 및 감독 ※ 구청장의 지시에 위반시는 피해발생의 경우 적용 나. 구청장이 가로수 등을 옮겨심기하는 경우 ⇒ 원인자가 옮겨심기에 따른 도급공사설계비를 세입세출외현금 구좌에 납부하고 사업완료 후 정산</p> <p>2. 제거하는 경우 가. 원인자가 가로수 등을 제거하는 경우 : 구청장의 승인 및 감독 ⇒ 동일 규격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 단, 다른 법률에 의한 조경관련 협의 후 원인자가 같은 노선에 재조성 시는 동일 규격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와 재조성비의 차액 나. 구청장이 가로수 등을 제거하는 경우 ⇒ 동일 규격 대체식재를 위한 도급공사설계비+제거비</p>
비 고	<p>○ 도급공사설계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재료비 + 노무비+ 제경비) 적용하여 산정</p> <p>○ 수목비: 가격정보(조달청)지 가격, 가격이 없는 경우 시중시가를 적용하여 산정</p> <p>○ 하자보수를 위한 담보: 보증보험증권이나 수목이 고사했을 경우를 고려 한 도급공사비를 현금으로 하자담보 기간 동안 예치토록 조치</p> <p>○ 하자보수보증금 환불 등: 하자담보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하 자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으면 예치받은 담보금을 환불</p> <p>○ 금액 산정 시 1,000원 미만은 절사한다.</p>

【 관계 법령 】

□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가로수의 조성·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및 생활·교통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가로수를 다른 도시숲등과 연계되도록 조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차별 가로수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진단조사(이하 “진단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2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절차, 승인기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4. 1. 23.>

1. 가로수의 심고 가꾸기
2. 가로수의 옮겨심기
3. 가로수의 제거
4. 가로수의 가지치기

5. 그 밖에 가로수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도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관리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도로공사 또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도로에 가로수를 조성·유지하여야 하며, 도로의 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가로수를 조성할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3.>

⑤ 가로수의 조성·관리에 따른 수종선정 기준 및 심는 지역 기준, 진단조사의 방법·대상·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 1. 23.>